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. 3. 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도서관의 도로명 주소 변경과 다문화자료실 등의 신설을 반영하고 등록 규제와 인권침해 우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,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서 도로명 주소를 변경함(안 제2조)
- 나. 시설 사용승낙의 취소 규정 보완(안 제10조제1항 제4호, 제5호)
- 다. 입관의 제한 사유 중 장애인의 인권 차별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(안 제17조)
- 라. 모자열람실 명칭 변경, 다문화자료실과 장애인정보누리터 신설과 복사 규격 현실화(별표 1, 2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(참조 : 교육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(<http://www.sdm.go.kr>) 메인화면 상단(전체메뉴-구청소식-공고-입법예고)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주소·성명(단체의 경우,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전화번호

※ 보내실 곳 : 120-1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, 3층  
(홍은2동)

※ 기타사항 문의 : 전화 : 330-1966, FAX : 330-8713